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례 42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에 관한 기사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신청인 : 고 ○ ○
 피신청인 : (주)제주일보사
 종 재 부 : 제주중재부
 접수일 : 2011. 5.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한 호스트바가 극성이며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유흥주점의 상호를 함께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청인의 유흥업소를 마치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전, 신청인은 신청을 자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제주일보 : 『**‘꽃미남 대기 호스트바 극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신제주 일대서 홍보 전단 배포-호객행위 노골화

남성종업원을 고용해 여성손님에게 ‘술시중 들고 여흥 돋우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호빠’ (호스트바)들의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부터 6월까지 호빠를 중심으로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호빠 영업이 한층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동과 노현동 등 유흥주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호빠를 홍보하는 전단지 배포와 호객행위 등이 노골화해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낳고 있다. 문제의 전단지엔 ‘강남선수 00명 항시 대기’, ‘강남 꽃미남 DJ 00명 항시 대기’ 등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예전엔 사람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전단지 배포행위 자체도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는 등 양성화하고 있다. 실제 저녁시간대 연동 유흥가에서는 젊은 남성 두세 명이 호빠 홍보 전단지를 다룬 이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호빠에 이어 ‘디빠’도 등장했다. 디빠에서 ‘디’는 덤핑(Dumping)의 머리말로 싸다는 의미다. 아울러 성매매 전단과 음란광고물 등도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K씨(42.연동)는 “신제주권 일대는 호빠가 판치고 유해 광고로 도배돼 가족과 함께 못 다닐 정도”라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호빠 영업실태를 파악, 불법 확인 시 강력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9,911,22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